제434회국회(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평의원회 외부위원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명확화>
▣ 정을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933호)

2026. 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강 대 훈

목 차

Ⅰ. 제안경위 ·····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Ⅲ. 검토의견 ····· 2

1. 평의원회 외부위원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명확화(안 12조의3 제2항) ····· 2

Ⅰ.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정을호의원 등 20인

나. 발 의 일 : 2026. 2. 20.

다. 회 부 일 : 2026. 2. 23.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평의원회 위원 구성에 대하여 과학기술원에 재직 중인 교원·직원·학생, 동문 등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면서도 과기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과기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기준이 포괄적이고 모호한 측면이 있어 기관의 장이나 이사장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심의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위축될 수 있음.

이에 평의원회 위원 구성 요건 중 과기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평의원회 구성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고 그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제2항).

Ⅲ. 검토의견

1. 평의원회 외부위원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명확화(안 제12조의3제2항)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평의원회 위원 구성요건 중 “동문 및 과학기술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의3(평의원회) ① (생 략) ② 평의원회는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교원, 직원(연구원을 포함한다), 학생 등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대경과기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 ⑤ (생 략)	제12조의3(평의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학생이 추천한 동문----------. ③ ~ ⑤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12조의3[1]은 중장기 발전계획, 교육과정 운영·연구 및 교직원·연구원·학생 복지 등 과기원 운영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평의원회를 두도록 하고, 평의원회는 11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교원·직원(연구원 포함)·학생 등 과기원 구성원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과 '동문 및 과기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외부인사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 동 법 시행령[2]은 평의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교원·직원·학생 대표 평의원은 선거로 선출하고, 동문 등 외부 평의원은 총장이 위촉하도록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에 위임하고 있음.

---

1)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3(평의원회) ① 대경과기원(부설기관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2호는 자문에 한정한다.
1.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 과정의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교원・직원・연구원・학생의 복지에 관한 중요한 사항
4. 대경과기원의 운영에 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5. 그 밖에 총장, 의장 또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이 학교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 평의원회는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교원, 직원(연구원을 포함한다), 학생 등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대경과기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2)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5조의2(평의원회)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부설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평의원회를 구성할 때 교원, 직원(연구원을 포함한다), 학생 등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하는 평의원은 선거로 선출한다. 다만,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동문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평의원으로 포함할 경우 해당 평의원은 총장이 위촉한다.

② 평의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임시회의는 수시로 개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의원회 선출・위촉, 평의원회의 회의, 그 밖에 평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이에 따라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정관」[3]은 평의원회의 구체적인 구성을 교원 5명, 연구원 2명, 직원 2명, 학생 2명, 외부인사 2명으로 구체화하고 있으며, 동문 등 외부인사는 총장이 식견과 경륜을 갖춘 교외인사를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 대구경북과기원 평의원회 구성 >

구분	구성원 대표				교외 인사
	교원	연구원	직원	학생	
구성	5인	2인	2인	2인	2인
자격	3년이상 재직자			학생 대표	동문 및 대구경북과기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선출방식	선거				총장이 위촉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이처럼 현행 평의원회 제도는 외부 평의원의 자격기준을 '동문 및 과기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위촉권도 총장에게 부여하고 있어 평의원회 구성이 학내 구성원의 참여보다는 기관장의 재량에 좌우될 여지가 있음.

---

3)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정관」 제28조 (평의원회 구성) ① 평의원회는 교원, 연구원, 일반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과 동문 및 대경과기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각각의 구성단위 정원은 다음과 같다.
1. 교원 : 5명
2. 연구원 : 2명
3. 일반직원 : 2명
4. 학생 : 2명
5. 총장이 추천하는 동문 및 대경과기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외부인사 : 2명
② 평의원회 구성에 있어서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총장이 정하는바에 따른 주요조직의 장은 평의원이 될 수 없다.
제29조 (평의원의 선출 및 위촉) ① 교원, 연구원, 일반직원,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전임 평의원 만료 30일전까지 선출하되, 선출방법은 비밀, 무기명, 직접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② 교원, 연구원, 일반직원,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에 대한 사항은 평의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③ 동문 및 대경과기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평의원은 총장이 대경과기원 운영에 대한 식견과 경륜을 갖춘 외부인사를 위촉한다.

- 법령뿐 아니라 대구경북과기원의 정관도 외부 평의원에 대하여 총장의 위촉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교원·연구원·직원·학생 대표 평의원과 같이 선거절차 등 객관적인 절차는 마련하고 있지 않음.
- 이처럼 외부 평의원 선정에 관한 실질적 결정권이 총장에게 집중된 구조에서는, 평의원회 구성 과정이 학내 구성원의 참여보다는 기관장의 판단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해 평의원회 운영의 공정성·대표성 및 신뢰성이 충분히 확보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개정안은 외부 평의원의 범위를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외부위원 선정기준의 모호성을 줄이고, 학내 구성원의 참여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해 보임.

○ 다만,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평의원회에 외부인사를 포함하도록 한 현행법은 학생을 포함한 학내 구성원 의견 수렴뿐 아니라 과기원 운영·발전에 관한 외부의 경험과 시각을 함께 반영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는바, 개정안이 이러한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지 논의가 필요해 보임.

- 개정안과 같이 외부 평의원의 범위를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제한하는 것은 평의원회에 외부의 다양한 경험과 시각을 반영하려는 현행 제도의 취지를 다소 약화시킬 수 있으며,

- 아울러, 학생이 이미 독립된 구성단위로 평의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점(13명 중 2인)을 고려할 때, 외부 평의원까지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구성하는 것이 평의원회 전체 구성의 균형과 대표성 측면에서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함.

○ 둘째, 국립대학법인 등 유사기관이 외부위원을 포함한 평의원회 구성 기준을 정관·학칙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4대 과학기술원[4]에 대해서만 외부 평의원의 자격을 법률로 직접 제한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

- 4대 과기원과 성격이 유사한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등 국립대학교법인의 경우 각 개별법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이 적용되며, 「고등교육법」[5]은 대학평의원회에

4) 개정안과 같이 외부 평의원의 범위를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31, 정을호의원 대표발의),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32, 정을호의원 대표발의),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34, 정을호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함께 심사하여야 하며, 동일한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216930, 정을호의원 대표발의)이 교육위원회에 계류되어있으므로 그 심사경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5) **「고등교육법」 19조의2(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등)** ② 대학평의원회는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定數)의 2분의 1을 초과해서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4대 과기원법과 동일하게 규정 하면서, 그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 및 학칙에 위임하고 있음.

- 따라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 4개 과기원에 대해서만 근거 법률에 외부 인사를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직접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 기준과 절차는 기관별 특성에 맞게 정관으로 구체화하도록 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이 아닌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평의원회 교외 구성원이 학내 의견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이를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만 한정할 경우 현행 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현행 문구는 유지하되, ‘학생이 추천한 동문’을 추가로 명시하고, 구체적인 절차는 정관 등 내부 규정으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229

는 아니 된다. ③ ~ ⑥ (생 략)
⑦ 그 밖에 대학평의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 및 학칙으로 정한다.